

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정 2018. 11. 7 조례 제2419호
일부개정 2023. 12. 28 조례 제3051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광명시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제공을 통한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3. 12. 28>

1. “어르신”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어르신 우선주차구역”(이하 “우선주차구역”이라 한다)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광명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
2.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·관리하는 공공시설

제4조(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어르신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·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.

③ 우선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,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.

1.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
2.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장소
3.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

제5조(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

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바닥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를 부착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.

②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의 규격과 내용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.

제6조(고령운전자 표지 발급)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어르신 운전자 중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 운전자의 신청이 있을 시 고령운전자 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어르신 운전자는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3. 12. 28]

제7조(어르신우선주차구역 이용) 어르신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3. 12. 28]

제8조(주차차량 이동 권고)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어르신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[중전 제6조에서 이동 2023. 12. 28]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을 개·보수할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23. 12. 28 조례 제3051호>

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어르신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 표지(제5조제2항 관련)

가.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 표시



나.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



= 비 고 =

1. 규 격

가. 표지판: 70cm×60cm

나. 어르신 우선주차구역: 2.5m×5.1m

2. 색

가. 표지판의 색은 청색(바탕)과 백색(어르신그림·기호·문자)을 사용한다.

나. 어르신 우선주차구획의 주차구획선은 노란색으로 한다.

3. 설치위치: 표지의 설치위치는 사용자의 눈높이(150cm)와 사용자가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.

4.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가. 어르신들의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주차구역을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